학칙 제20조(전과) 일부 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❍ 재학생 진로탐색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 기회 확대

❍ 변경한 학과의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 방지

2. 주요내용

가. 전과 횟수 변경(1회 → 2회)

나. 전과 신청시기 명확화(학적변동기간)

다. 일부 모호한 표현의 문구 명확화

3.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0조(전과) ① 전과는 제 2학년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입학정원의 30%(**단, 사범계열학**과는 10% 이내)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**매 학기 초**에 시행한다. 단, **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의 전과(전입)는 허용치** 않는다.(개정 96. 3. 1)(개정 99. 3. 12)(개정 2000. 3. 29)(개정 2002. 8. 6)(개정 2005. 2. 16)(개정 2006. 1. 25)(개정 2009. 5. 1)	제20조(전과) ① 전과는 제 2학년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입학정원의 30%(**교육**과는 10%이내)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**학적변동기간**에 시행한다. 단, **외국인 학생은 정원을 제한하지** 않는다.(개정 96. 3. 1)(개정 99. 3. 12)(개정 2000. 3. 29)(개정 2002. 8. 6)(개정 2005. 2. 16)(개정 2006. 1. 25)(개정 2009. 5. 1)	의료법 부분을 새로운 항으로 신설(2항) 외국인 부분을 (기존 4항) 1항에 통합하여 연급 시행시기 수정
② **제1항에 의거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각기 전급학년의 등록학기 이상을 취득한 자로 1회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92. 9. 23)(개정 9**	② **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의 전과(전입)는 허용치 않는**	항 이동 의료법 부분을 (기존 1항) 2항으로 신설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7. 8. 25)(개정 99. 3. 12)(개정 2001. 12. 1)	다.	
③ 전과한 자는 해당 학부(과)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받으며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	③ 제1항에 의거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전과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.(개정 92. 9. 23)(개정 97. 8. 25)(개정 99. 3. 12)(개정 2001. 12. 1)	항 이동 횟수 수정
④ 외국인 학생은 제①항의 전과 허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.	④ 전과한 자는 해당 학부(과)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받으며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	항 이동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

학칙 제38조(이수학점) 일부 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○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율선택과목에 교과이수구분 부재에 대한 지적 해소

○ 교과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이수 과목들에 대하여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

2. 주요 내용

○ 자율선택 교과목 이수구분이 없음

○ 교양, 제1전공, 제2전공, 부전공, 교직, 군사학점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수 교과목을 자율선택학점으로 인정됨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38조(이수학점) ① 재학생은 매 학기 15~19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, 전 학기 평균·평점이 "4.0"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초과 이수 할 수 있다. 단, 군사학과의 특성화 학점, 학군사관 후보생의 군사학 학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, 국고사업 등 특별히 지정된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. 으의 경우 이수학점은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(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제외)	제38조(이수학점)① (현행과 같음)	
② 삭제<2019.3.19.>	② 학칙 제28조(교과)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(교육과정의 구성)에 의거 구성된 과정별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율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	